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3. 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7. 2. 박용갑의원 등 12인

나. 회부일자: 2025. 7. 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5. 9. 25.) 상정 · 제안설명
· 검토보고 · 대체토론 · 소위원회부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(2026. 3. 11.) 상정 · 축조심사 · 의결(대안
반영폐기)

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(2026. 3. 12.) 상정 · 소위심사
보고 · 찬반토론 ·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박용갑의원)

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,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,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.

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용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이에 창업자, 상인,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용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 성소미)

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를 창업자,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나 상인회 등이 운영하는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 그리고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·용자(이차 보전 포함)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(안 제17조).

개정안은 창업예정자, 상인, 상인회 등이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

까지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면서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융자하거나 이차 보전(利差補填)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고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.

다만,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, 현행 규정은 빈 점포의 활용 용도에 있어 비영리성 및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전통시장 등에서 창업하려는 자와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여 빈 점포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인바, 빈 점포 활용의 공공성과 빈 점포 증가 추세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또한, 빈 점포의 활용 지원 방식과 관련하여, 현행 규정은 시설 수리와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, 개정안은 융자 또는 이차 보전의 지원 방식을 추가하고 있는바,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 증가 추세의 심각성으로 인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, 영리 목적의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임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: 김원이 위원)
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, 오세희의원, 김한규의원, 박용갑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통합·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.

대안의 주요내용은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6. 심사결과

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,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

하지 아니하기로 함(대안반영 폐기).